

2026년 아로마요양원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1. 계약기간 :

- 가. 계약기간은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부터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까지로 한다.
- 나.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,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,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.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,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다.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(또는 보호자)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이용자(또는 보호자)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.
- 라. 다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(또는 보호자)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.(단,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.)
- 마. 계약내용 변경사항(장기요양 인정등급, 장기요양 급여비용, 비급여비용 등)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.

2. 계약의 목적 :

아로마요양원2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, 친적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.

3.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

가. 월이용료 : 당해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, 입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%를 본인이 부담한다.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지 아니하며,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는 12%, 8%를 본인이 부담한다.

[2026년 1월부터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4.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」 개정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며, 다만,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6년 12월 31까지 유예기간을 두어, 요양보호사 배치 인원에 따라 이용수가(시설 이용료)가 변경될 예정이다.]

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 2.3:1 (단위 : 원)

등 급	1일 수가	30일 기준	본인부담금 (1일기준)				비 고
			일반 대상자 (20%)	경감대상자		국민기초 생활수급 권자	
				12%	8%		
1등급	88,520	2,655,600	17,700	10,620	7,080	－	
2등급	82,120	2,463,600	16,420	9,850	6,570	－	
3등급	77,540	2,326,200	15,510	9,300	6,200	－	

※ 4등급~ 시설급여는 3등급 수가 적용

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 2.1:1 (단위 : 원)

등 급	1일 수가	30일 기준	본인부담금 (1일기준)				비 고
			일반 대상자 (20%)	경감대상자		국민기초 생활수급 권자	
				12%	8%		
1등급	93,070원	2,792,100	18,614	11,168	7,446	－	
2등급	86,340원	2,590,200	17,268	10,361	6,907	－	
3등급	8,540원	2,446,200	16,308	9,785	6,523	－	

※ 4등급~ 시설급여는 3등급 수가 적용

나. 요양시설 계약의사 진찰에 따른 회당 본인부담금 :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, 월 2회 이상 계약의 진료비가 제공되며 초진은 계약의사가 어르신을 처음 뵙고 진찰한 경우를 말 하며 그 이후는 모두 재진에 해당,

본인부담금은 진료수가 변동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, 입소자는 계약의 진료비 비용의 20%를 본인이 부담한다.

기초생활수급권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지 아니하며,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는 12%, 8%를 본인이 부담한다.

다. 기타비용부담액(비급여대상)

(단위 : 원)

비급여 항목	1식 단가 기준	30일 기준	비 고
식대비 1일*3식(간식비 포함)	3,000원	270,000원	

4.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(수급자)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
가. 서비스제공자의 의무

- 1)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
- 2)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 는 제외)
- 3)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

나. 수급자의 의무

- 1) 월 이용료 납부 의무
- 2)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
- 3) 기관내의 개인 청결 의무
- 4)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

다. 수급자의 권리

- 1)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.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.
- 2)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.
- 3)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.
- 4)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.

- 5)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,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.
- 6)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.
- 7)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.
- 8)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.

라. 신원인수인의 의무

- 1)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.
- 2)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.
- 3)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.
- 4)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.
- 5)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, 간호 및 간병, 입·퇴소 절차,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.

마. 신원인수인의 권리

- 1)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.
- 2)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.
- 3)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.
- 4)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
5. 계약해제

- 가. 이용자(또는 보호자)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.
- 나.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.
- 다.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또는 해지 처리한다.
 - 1)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 - 2)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
 - 3) 이용자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(단, 시설장은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)
 - 4) 이용자가 사망한 때
 - 5)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.